

2025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러두기

- 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표준화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구체적으로 안내·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I.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06
2장	사안처리 흐름도	09
3장	사전 예방활동	10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4

II.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18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18
	2. 신고 및 접수	21
	3. 학교의 대응 요령	28
2장	사안조사	34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4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36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40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47
	5. 긴급조치	50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53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61

III.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66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67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69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71
	1. 관계회복	71
	2. 분쟁조정	76

IV. 조치결정 및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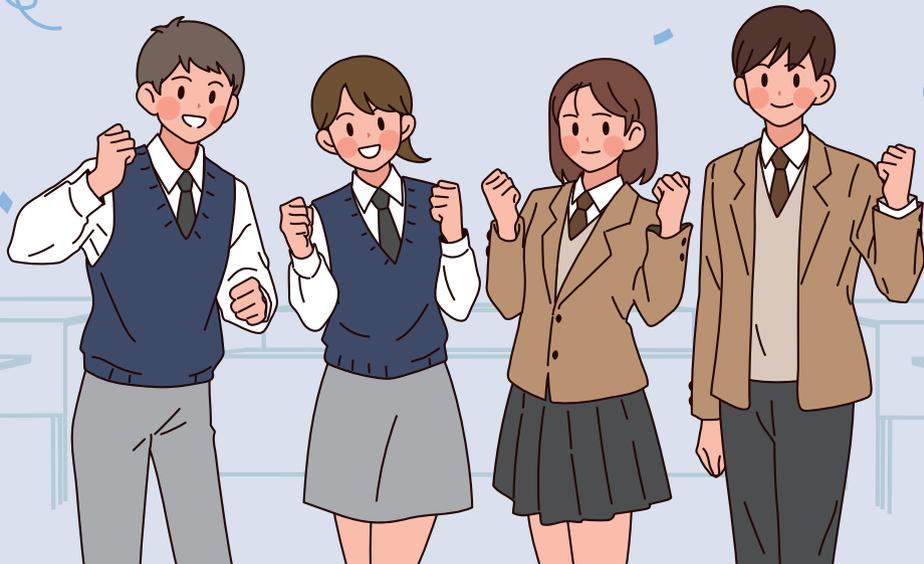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84
	1.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4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90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91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93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93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9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105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108
	1. 기재 및 기재유보	108
	2. 기재내용 삭제	111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14
	1. 행정심판	114
	2. 행정소송	119

[참고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	122
[참고2]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강화)	124

[부록1]	각종 양식	127
[부록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156
[부록3]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59

I. 학교폭력의 이해

-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 2장. 사안처리 흐름도
- 3장. 사전 예방활동
-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어정의

-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②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 * 유예(휴학, 유급 포함)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
 - *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③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학교폭력 개념

- ①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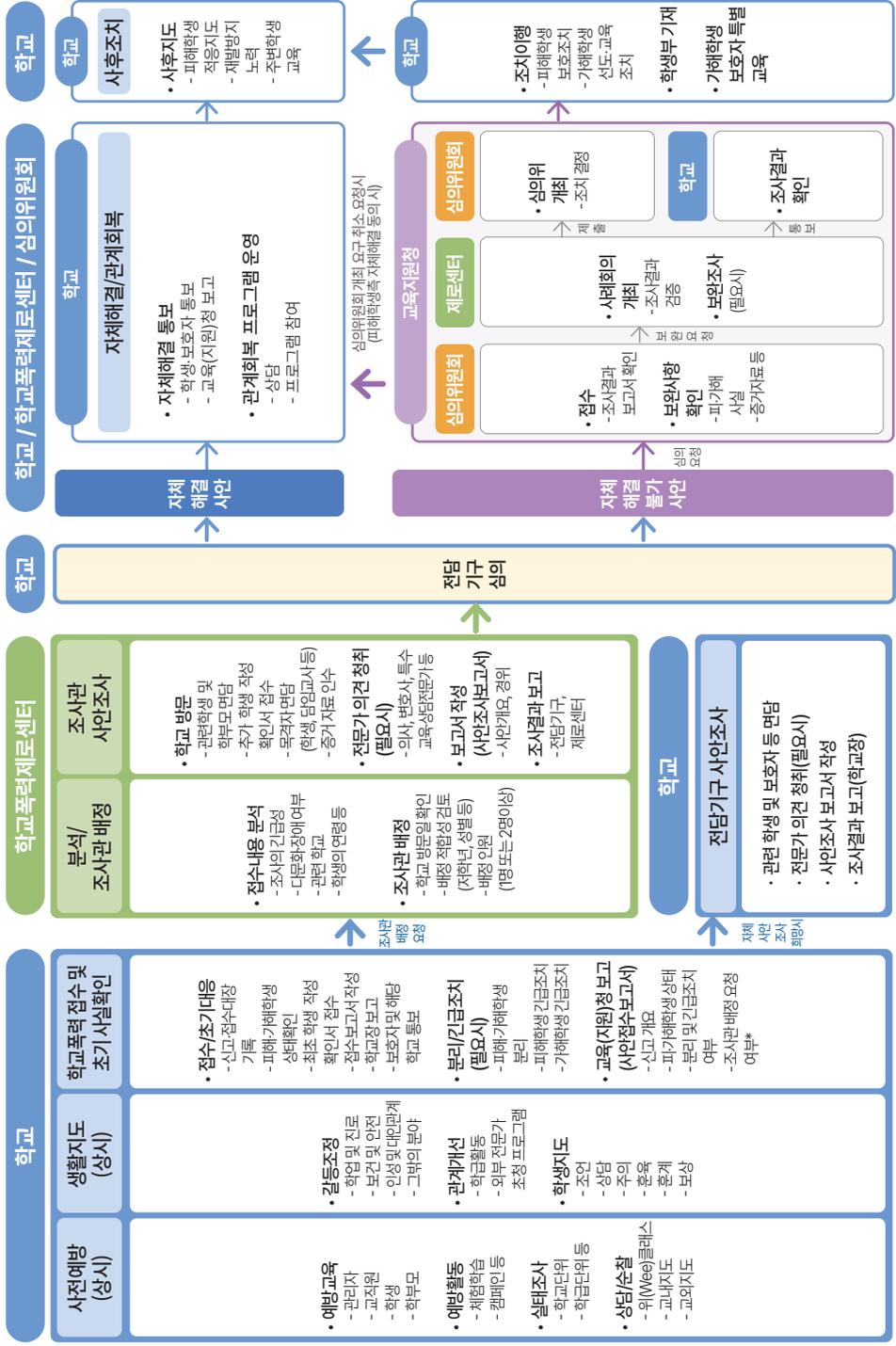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로 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표기하기로 함.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고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유의사항**

-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가이드북」에 따라 운영).
-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

2장 사안처리 매뉴얼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은 사안접수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3장 사전 예방활동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⑪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 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한다(법률 제14조제5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4항).
-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대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지역 연계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참고 학교 관리자(학교장, 교감) 대상 예방교육

- 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법률 제11조제13항).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대상	횟수	방법
학교장, 교감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 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17조제1항)

참고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교육

- 교육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참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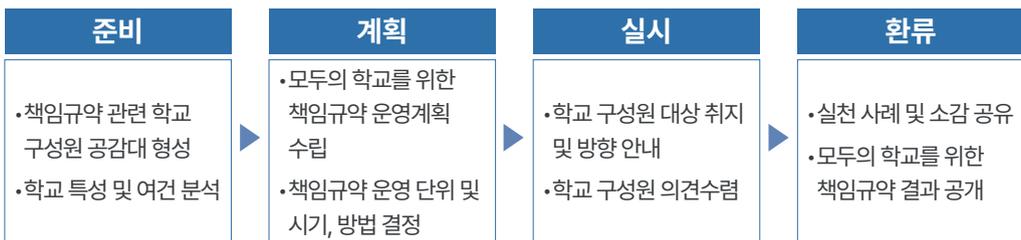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3항).

참고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 **(개념)**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 **(배경)**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필요
- **(주요 내용)**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협조 신학기 초 안내 필요
- **(관련 자료)** 책임규약 가이드북 및 참고 양식(가정통신문, 활동지 등), 구성원별(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 안내 동영상 등 제공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 **(활용 방안)** 신학기 초 **학교폭력예방교육 집중운영기간**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운영**
 - * 입학식, 학부모 총회, 학부모 연수 등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 학교문화 책임규약 개정 가이드북을 참고해 의견수렴, 서명, 캠페인 추진

[책임규약 단계별 주요 내용]



참고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정통신문(예시)

학교폭력은 이제 그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적축,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예시)

<학 생>

-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 스스로가 공손한 태도로 행동하겠습니다.
- ✓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 ✓ 학교 친구들을 장난으로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 ✓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 교내 괴롭힘을 담임 선생님과 주변의 선생님에게 알려겠습니다.

<보호자/학부모>

- ✓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 ✓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 ✓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 사>

- ✓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 ✓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 ✓ 수업시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2025. 00. 00. 000 학교장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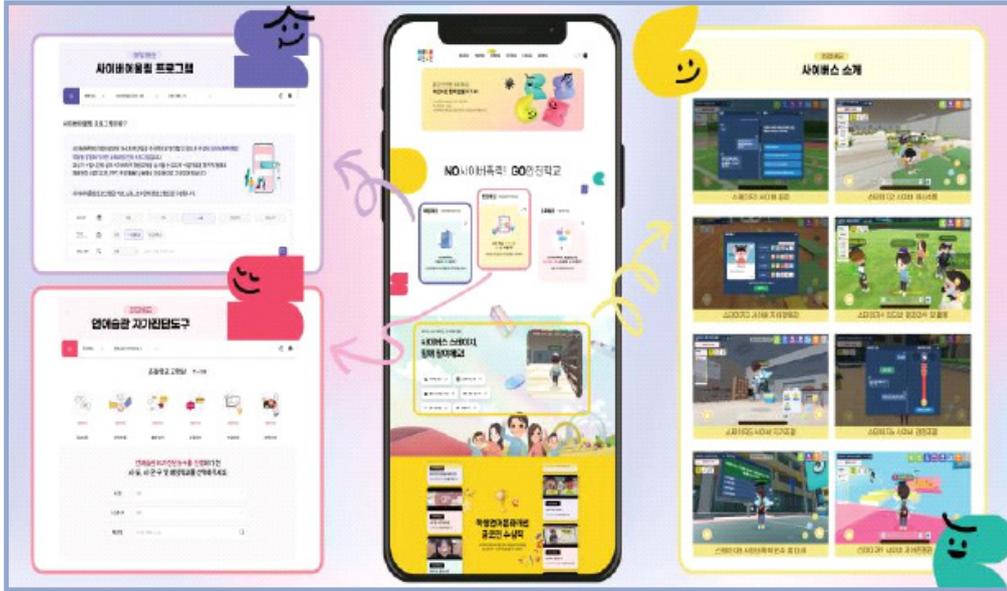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참고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도란도란

<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https://www.stopbullying.re.kr>



II.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 2장. 사안조사
-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초기 감지·인지의 중요성

-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 학교폭력 발생 전
 -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 학교폭력 감지·인지 시
 -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학교폭력이 감지·인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20조제4항),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안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참고 교사의 관찰 및 사실확인 요령

- **피해학생 관찰:** 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계회복 등 피해학생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한다.**
- **가해학생 관찰:** 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가해학생 간에도 힘의 우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의 역동을 살핀다.**
- **주변학생 관찰:**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학생 및 주변학생들의 심리상태(불안감 등)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학교폭력 사실확인 요령:**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한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다수 또는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피·가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학생에 대한 사실확인을 개별로 한다.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대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한다.**

☑ 학교폭력 감지·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유형	내용(예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교·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교내 학교폭력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메일, 어울림 앱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 피해·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의 상담
교내·외 순회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 학교폭력 징후

-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피해학생의 징후(예시)

가정에서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2. 신고 및 접수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 신고의무 (법률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학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안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법률 제19조제4항)
- 교원의 보고의무 (법률 제20조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법률 제21조제1항)
 - 교원 등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신고 및 접수 절차



☑ 신고 방법

- 교내 신고방법
 -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설문조사 유의사항

▶ **학생들이 설문지를 편안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앉게 하고,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교사가 직접 회수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 **비밀을 보장한다.**

- 설문결과가 피해 및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사는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 SNS

- 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

•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 휴대전화

-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포스터 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외 신고방법**

• 112 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누리집)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참고** **비밀보장**

▶ **왜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을까?**

-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비밀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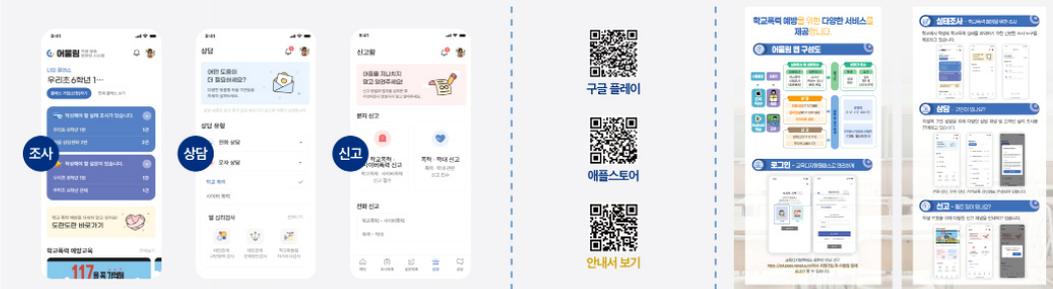
-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 (어울림 앱) 안내

어울림 앱 소개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어울림 앱)은 학교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설문조사 도구 제공 및 상담·신고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앱 서비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어울림 앱



어울림 앱 회원가입



회원가입

- 교육디지털원패스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가능

주요 메뉴



설문조사

- 학교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에 대한 학생의 신고 및 교사의 설문조사
- 학교폭력 설문조사 표준 문항 제공
- 설문조사 표준 문항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필요로 하는 문항을 새롭게 추가·삭제 및 조사 결과 활용(통계, 그래프) 가능(설문조사)



클래스

- 교사 및 학생이 조사를 진행하는 학급단위인 클래스 기능
- 교사가 클래스 개설 시, 클래스 코드(숫자)가 무작위 생성되며, 학생들에게 해당 클래스 코드를 안내하여 입력 후 클래스 참여
- 클래스를 통해 학급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가능



상담

- 다양한 채널(전화, 문자, 카카오톡)의 상담 연계
- 웹심리검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계



신고

- 신고 전화(117/112), 문자(#117) 바로 연결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

-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수시로 학생들이 시청 가능하며, 교사들의 수업 시간에 연계 가능

☑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폭력 피해 징후를 보호자가 먼저 알아채고 학교로 알려왔을 때,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안심시키고, 믿음 주기

-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 보호자와 협력관계 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

[신고자가 피해학생일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서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귀가 시 하갯길에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 해결자로서의 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 상담자로서의 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고자가 주변학생일 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신고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주어야 하는가?

·신고 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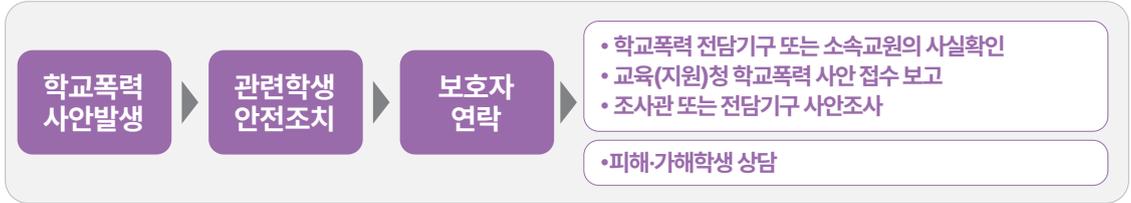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3. 학교의 대응 요령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참고 외부기관 연계

▶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학기 초 각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서를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 주요 자원체제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
- 위(Wee)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 ※ 위(Wee)클래스(학교 단위) - 위(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 위(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 청소년 1388 :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로 심리상담, 학교 관련 상담, 가정 문제 상담, 진로 상담 등의 맞춤 서비스 제공
- 푸른나무재단(1588-9128) :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예시)

● 주요 대상별 초기 대응 요령

피해 학생 조 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한다.

가해 학생 조 치

-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킨다.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한다.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한다.
 - ➔ 가해학생과 대화가 진행된 경우
가치 판단 없이 가해학생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후 조사과정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 가해학생이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
가해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후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보 호 자 조 치

-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해당 시점에서 파악된 사안의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 보호자의 학교 방문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 자녀와 만날 장소 및 시간을 협의한다.
- 학교 측의 대응 계획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후 사안조사 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
- 학생이 귀가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목적학생· 주변 학생 조 치

-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한다.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우는 학생이 있는지 조용히 파악)
-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④ 신체폭력

·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보건교사는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장 등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연락 :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 병원 이송 시 동승 · 사안조사에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감 : 상황 파악, 지시 · 책임교사 :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또는 가해학생 대상 초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④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 피해학생 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 가해학생 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④ 금품갈취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 피해학생 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한다.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는다.

● **강요·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 **학생의 행동 감지**: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보호자에게도 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 **피해학생 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한다.
- 당분간 보호자가 등·하교 길에 동행한다.

· **가해학생 조치**

-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따돌림**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 **2차 피해 주의하기**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 **신고를 두려워하는 피해학생 돕기**

-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을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조치를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예)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 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당한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한다.

· **피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④ **사이버폭력**

· **평소 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한다.

· **피해학생 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사이버폭력 발생 시, 증거 확보 후 피해학생·보호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 **가해학생 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성폭력**

·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 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 **피해학생의 조치**

-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의 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 방과 후 학교폭력 대응 요령

-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 필요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 상대방의 신원 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린다.
 -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성폭력 등의 경우에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 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
 -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신고 다음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피해 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안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조를 요청한다.
 - 학원 등 외부 기관(단체, 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2장 사안조사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의 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한다.
- 학교폭력 사실 확인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 사안의 특성 및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자체 조사가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 가능
- 교육(지원)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식1-3>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심의한다.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심의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법률 제17조의4제3항).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삭제 심의
 - ※ 다만, 2023. 2. 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인 경우에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를 심의
 -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 학교폭력 실태조사
 -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 학교의 장은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조사관의 위촉(임명)과 해촉

- 조사관 임명·위촉권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법률 제11조의2제4항). 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법률 제11조의2제11항).

☞ 참고 교육감이 정하는 조사관의 요건, 역할 등에 관한 예시

▶ 조사관의 요건 등

- 조사관의 요건
 -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 조사관 규모는 지역의 학교 및 학생수, 학교폭력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조사관의 임기
 - 조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되는 조사관의 임기는 전임 조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관의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방법**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피·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요청
- 피·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요청

(법률 제11조의2제4항)

- 관련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 * 면담과정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조사관이 학교에 전달할 수 있음
- 필요시, 관련 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 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 **사례회의 참석**
 - 사례회의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조사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에 자문 요청**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참고 조사관 사안조사시 학교의 역할

- 학교장 자체해결 및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회복**
- **피·가해학생 분리** 실시, 필요시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
-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 교육(지원)청에 사안접수 보고 시, **관련학생의 조사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입**
-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 지원
-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
- 조사관이 **학부모 면담 요청 시, 장소 제공 ex. 학교 민원 면담실 등**
- 조사관이 관련교사 등에게 출석 · 진술 · 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시 협조
- 조사관이 **접수한 학생 확인서 원본 및 증빙자료 관리 및 조사관에게 사본 및 스캔본 제공**
 - * 관련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보안문서로 저장하는 등 보안에 유의
 - *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양식 2-7>'을 작성·관리

참고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의 협조사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은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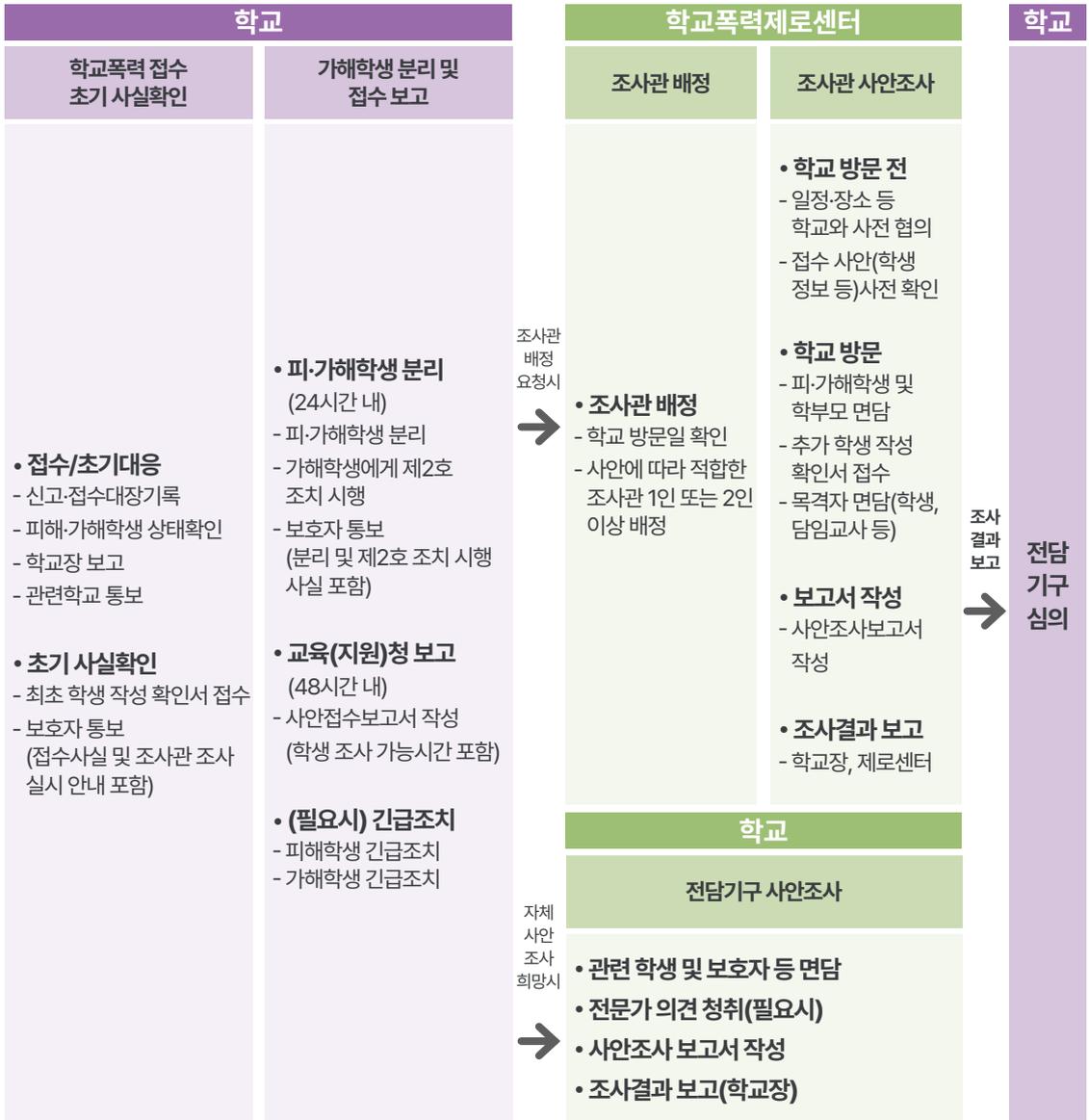
조사관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의 협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독립적이고 편안한 면담 공간(상담실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을 믿고 존중해 주시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에게 요청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의 자료 등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관련 사안,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가정학생, 위기학생 등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 관련한 비밀,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과 언쟁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사관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 학교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상시 착용
- 약속된 방문 일정과 시간을 준수하고, 미리 도착하기
- 학교 방문 시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과 태도를 유지
-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 조사 업무 외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양해를 구함
-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 업무는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을 인식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업무수행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보호자 안내 사항 참고(56쪽 참고)

☑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내용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학교폭력 사건발생인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양식1-1>에 반드시 기록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확인 실시-관련학생 확인서<양식2-1> ■ 신고접수된 사안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양식1-2>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3>, <양식2-1>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양식2-3>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제로센터 (조사관) (자체조사시 전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4>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 추가로 발견된 피해 사실 및 쟁점에 대해 피·가해학생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안조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부동의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법률 제13조의2제3항)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자체해결 사안

<학교> 자체해결/관계회복

- **자체해결 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자체해결 불가 사안

<제로센터> 사례회의 / 보완조사 / 관계개선 지원

- **사례회의 개최**
 - 조사의 완결성·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 (필요시)

- **보완조사**
 - 추가 조사
 - SPO 자문

관계개선 지원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함

☞
참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처리

-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예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처리**
 - 학교장은 초기 사실확인이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양식 3-6>,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다.
 - * 다만,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 가능

참고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의 처리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양식 3-7>

사안조사 절차(예시)

참고 사안조사의 유의 사항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사실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임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사실 확인

- ①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② (설문조사) 피해·가해학생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설문지 문항 제작 시 관련학생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③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④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참고 사실 확인 시 진위 파악 원칙

- **(면담결과와 관련 정보의 일치)** 피해 및 가해측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학생의 상호 인정)** 면담조사 결과를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 **(진술 맥락의 일관성 파악)** 언급한 진술에서 문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지 살핀다.
- **(목적자 확인)** 면담조사 결과와 목격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 **(정황증거 파악)** 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면담 조사]

-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 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 위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를 통해 심리검사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학생들이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시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한다.
- 면담조사 시 면담내용의 녹취는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 수집]

-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 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장애유무,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형태(집단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기간(1회성 · 지속적인 사안),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 정도, 진단서 발급 유무 등

[정황 파악]

-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을 파악한다.
- 피해학생(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을 확인한다.
-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를 파악한다.
- (힘의 불균형 파악)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 지 파악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은 물리적인 체격·체력은 물론, 언어·표정·심리적 표현 및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괴롭힘의 대상이 된 학생이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특히 그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집단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등을 확인한다.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여타 상황에서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서 사안조사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사안조사 내용 중 피해 및 가해학생의 참여한 의견 대립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할 수도 있다.

☑ 사안 보고

- (전담조사관) 작성된 사안조사 보고서를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 (전담기구) 작성된 사안조사 보고서를 학교장에 보고한다.

☑ 사안 조사 중점파악 요소

-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유형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참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 및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참고 비밀누설금지 의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전담기구뿐만 아니라 조사관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밀 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사안조사 시 비밀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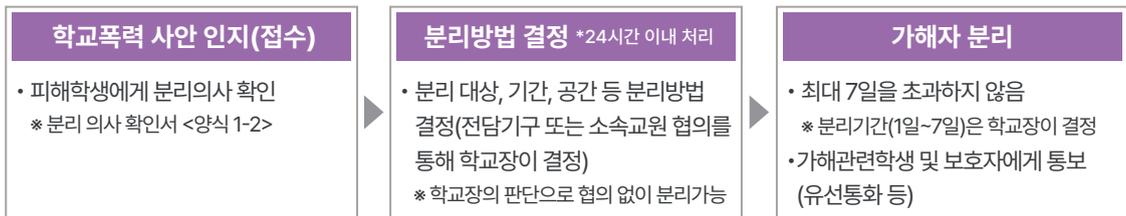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파악 요소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제1항).
 - 분리의 취지
 -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
 - ※ 관련학생 생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분리절차]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의 예외 사유**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가해자(교사 포함)에 대한 분리를 반대하는 경우
 -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관련학생이 소속한 학교가 다른 경우
 - ※ 단, 위탁교육시설에서 관련학생이 함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는 분리 실시
 -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이내에서 실시하되,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6호, 제7호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 가해자와의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참고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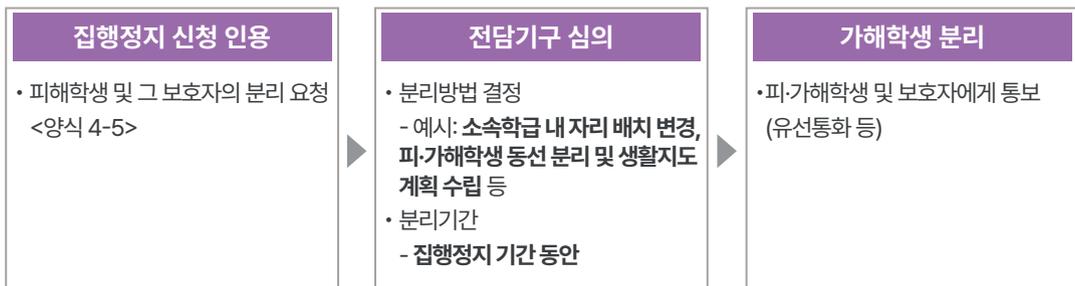
참고 유의사항

- 학교는 가해자 분리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급교체가 아니므로 다른 반으로의 분리 불가능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위(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 학급, 학년이 다를 경우에도 분리의사를 확인해야하며, 분리를 원하는 경우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동일한 피해학생이 동일한 가해학생과 최초 분리 이후, 분리 이전 사안에 대해 연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초 1회 분리만 실시함. 단, 최초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분리 실시할 수 있음.
- 피해학생 1명이 학급, 학년 전체를 신고하거나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을 연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학교 여건 및 환경, 피해학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가능함.
* 피해학생 상담,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함
-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인 경우,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함. 단, 분리 결정 일수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분리 시행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님을 안내

참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분리절차]



-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의 구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가해자를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5. 긴급조치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학교장은 추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 일시 보호(제2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 제6호 예시 :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제17조제4항에 따른 제2호 조치는 가해학생을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 참고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범위

• '접촉'의 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학교장은 추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의 범위

근거	사유	절차	범위	사후 절차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 결정	제2호	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학교장 결정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6호 출석정지 조치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7호 학급교체 조치에 따른 학적변동은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이후 반영
 - * 학급교체 조치는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함
- 학교장이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제17조제10항).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21조제1항).
 -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시행령 제21조제2항).
 - * 제17조제6항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제17조제5항 및 제6항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다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한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내부 결재 시행)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참고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조치 사항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심의위원회 의결일)까지로 정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7항).
-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 위(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참고 가해학생 우선 학급교체 시 조치 사항

- 우선 학급교체가 추인되면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교체할 학급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우선 학급교체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급교체로 인하여 학교폭력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참고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10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퇴학처분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

- 관련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 조성 and 관계형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생이 긴장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내용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한 후 전달할 수 있다.
-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상담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피해학생 상담]

- 초기 상담 시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 피해학생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관리할 것을 알려준다.
- 사안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주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해학생 상담]

- 초기 상담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경청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 피·가해로 결론이 나거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가정적 요인 포함)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 가해학생에게 사안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욕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된 상황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 진심어린 사과란? 단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피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상대에게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목격학생 상담]

-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 목격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힘들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 보호자 상담 시 유의사항

- 피·가해학생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응한다.
-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반응한다.
- 보호자가 사안의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문의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가해학생 징계 수위나 피해학생 보호 조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음을 이해한다.
-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상황이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처음에는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피해학생 보호자가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 교사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경우,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적 의견을 언급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전달한다.
※ (예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적 주관은 개입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 ①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됨을 이해한다.
- ② 가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중대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③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은 수용하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의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생의 가해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논쟁하기보다는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 (예시)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 ⑤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학생측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한다.
- ⑥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고,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지도할 것임을 안내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안내한다.
- ⑦ 가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 보호자 상담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예시)

[피해학생 보호자와 상담하기]

-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고 사안에 대처한다.

<p>1 공감과 존중</p> <p>“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지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p>“OO(자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 OO에게 누구로부터,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지? /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었는지?)</p>	
<p>2 관심과 배려</p> <p>“지금 OO(자녀)는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힘들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여쭙습니다.”</p>	
<p>3 욕구 탐색</p> <p>“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p> <p>“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p> <p>“OO(자녀)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OO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있을까요?”</p>	
<p>4 신뢰 형성</p> <p>“학교에서도 자녀와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고 확인하여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5 사실 확인</p> <p>“OO(자녀)에게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p> <p>“보호자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p> <p>“자녀가 현재 경험한 일에 대해 보호자 역시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OO(자녀) 보호와 중립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p>	

놀라고 속상했을 보호자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 주세요.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묻고, 염려되는 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 주세요.

힘들어하는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이 중요함을 안내해 주세요.

[가해학생 보호자와 상담하기]

- 피해학생의 의견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수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1 신고 내용 객관적 전달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O. O. 교실과 운동장에서 OO(자녀)가 △△에게 O회 이상 반복적으로 △△에게 ‘xx’라는 표현을 해서 △△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청해 주세요.)

2 가해 행동 인정하기

(OO(자녀)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OO(자녀)가 자신이 잘못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OO(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OO(자녀)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OO(자녀)가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올바르게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중요함을 설명해주세요.

3 조력과 재발 방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호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도움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OO(자녀)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OO(자녀)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있을까요?”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 주세요.

4 신뢰 형성

“학교에서도 사안과 관련하여 OO(자녀)와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고 조사하여 두 학생 모두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5 사실 확인

“OO(자녀)에게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역시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이 중요함을 안내해 주세요.

참고 보호자에게 유의사항 안내하기

- 관련학생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 ※ 학교폭력은 신고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쌍방 사안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담한 학생이나 목격학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 주세요.
- 상대측 학생을 혼계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사안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 본교 교사, 상대방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SNS상에서 유포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또는 재발 시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하기]



▶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 후, 가해학생을 최대 7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분리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제2호(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합니다.
- 필요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까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추정)학생 및 가해관련(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 사실확인 및 사안 조사

- 관련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최초 학생확인서를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추가 학생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호자 면담, 목격학생 면담 등을 실시합니다.

관련학생이 다른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학교별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안내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사안조사를 마치면,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합니다.
 - ⇒ 가해학생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양측의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교육장은 조치를 최종 결정하여 피·가해학생과 학교에 통보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능성, 피해학생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 피·가해학생은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 *이행기간 내 이행을 한 경우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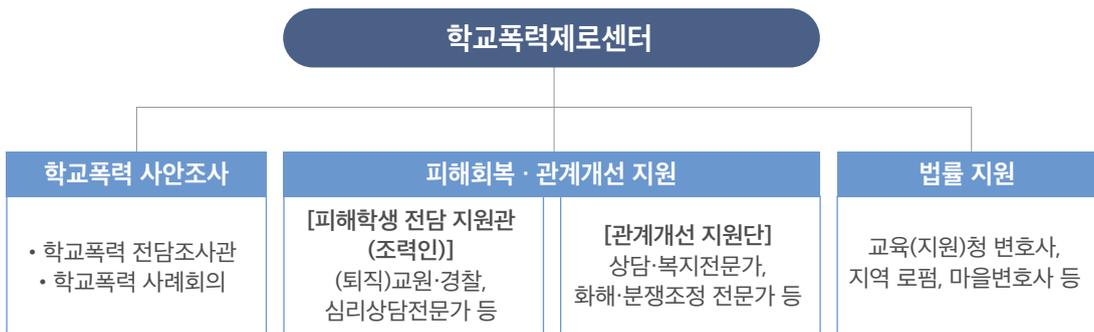
학교는 피해학생의 적응,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 주변학생 교육에 노력합니다.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 학교폭력 제로센터

-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구성과 역할
 - 학교폭력 피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전담부서(시행령 제8조제1항)

[학교폭력제로센터 구성(예시)]



- *사·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구성 및 운영은 달라질 수 있음
-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은 교육감(장)이 임명

- 학교폭력 사례회의 역할
 - **사안 조사 결과 검토:** 사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제로센터는 조사관 등이 보안 조사를 하도록 한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보완조사용) 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 * 중대사안 신고 여부,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
 - **참석 대상:**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SPO), 외부 전문가 등
 - ※ 교육(지원)청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성폭력, 언론보도사안 등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음
 - **운영 방법:** 수시, 정례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등의 방법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 법령상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는 없으나, 회의 결과에 따른 보완조사 요청 등 결과 보고(내부결재)는 필요함

참고 사례회의 준비와 운영(예시)

- 1) 사례회의 일정, 참석자 대상자, 회의장소 확인
- 2) 사례회의 안건 확인
 - 해당 사안 조사내용 검토 및 핵심 쟁점 논의
- 3) 사례회의 자료 준비
 - 사안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
- 4) 사례회의 진행
 - 개회, 참석자 확인, 사안조사 결과 보고, 검토 및 논의
 - 보완 조사 여부 결정, 그 외 논의사항 등
- 5)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지하여 추가조사
 -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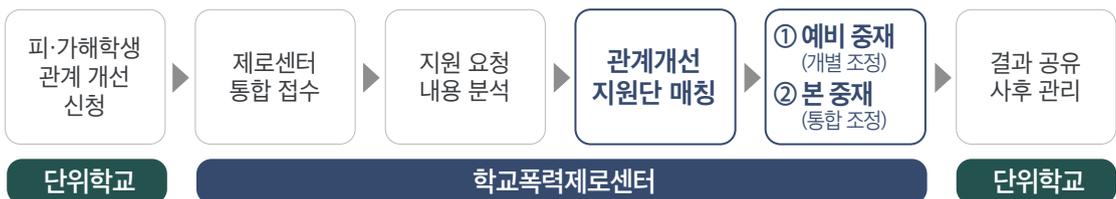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의3제1항).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역할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어려움 공감(경청)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의 연계(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제로센터 내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의 역할



※ 전담지원관(조력인)이 직접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고,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관계개선 지원단

- 교육전문가,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등으로 관계회복 지원단 구성
- 학교폭력에 대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관련 학생 학교생활 정상화·적응 지원



☑ 피해학생 법률지원

●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에게 법률 자문·소송 지원

*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담지원관(조력인)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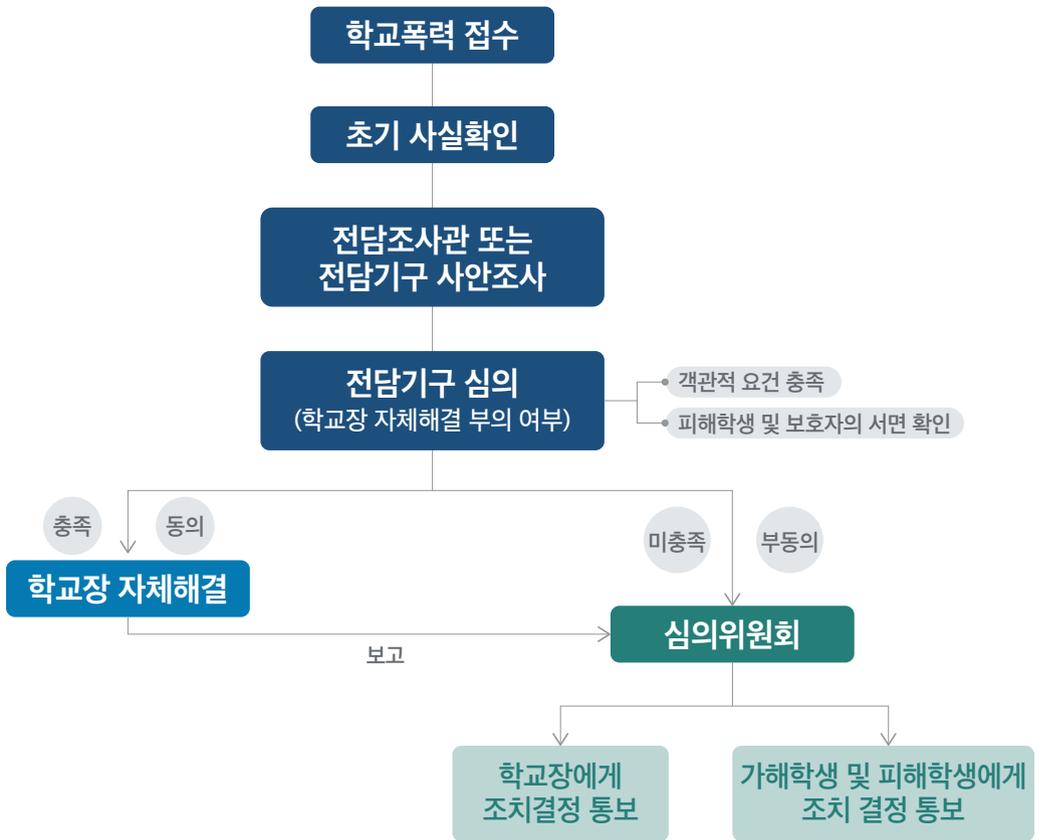
Ⅲ.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함.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부동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수 있음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반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학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경우(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양식3-4>
 -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학교장은 요청서<양식 3-4>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양식3-7>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①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 조사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확인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
 -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담기구와 조사관은 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추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2)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 ③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단,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한다.
- ④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양식2-4>,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양식 3-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양식3-2>를 첨부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양식3-3>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후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 ①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할 수 있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등 참조)

- ②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 학교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의견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참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라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이 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 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1. 관계회복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관계회복의 개념

-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관계회복의 목적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일상회복을 조력한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대상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법률 제13조의2제3항).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 ①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제로센터 관계개선 지원단)에서 관계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② 사안에 대한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③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 아래의 역할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안 - 학교]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책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안 -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제로센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개선 지원단 기획 및 운영 ■ 관계개선 지원단 역량강화 및 교육 ■ 관계회복 프로그램 사례 관리
관계개선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회복 프로그램 현장 지원 및 진행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상황에서의 자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방법

- ① 관계회복은 필요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
- ② 운영 방법

사전 개별면담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
관계회복 프로그램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력(직접 대면 및 소통)

③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피해)**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시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력
- ▶ **(가해)** 잘못된 행동을 충분히 인정 했는지 여부
- ▶ **(가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 ※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회복을 시도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
- ▶ **(가해)** 잘못된 행동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
- ▶ **(피·가해)** 사과의 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해 피해측 입장을 배려하였는지 여부
- ▶ **(피·가해)** 사과했을 때 피해 측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참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한 측이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단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 학교 및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부터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학생과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용기를 낸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감, 지지 및 응원을 하고, 동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시 모든 단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양측 학생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도록 한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단,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중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법률 제13조의2제1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한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사안처리를 갈음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변경 또는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음.

참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정통신문(예시)

학교폭력 발생 후, 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한 관계회복

- 학교폭력 관계회복을 위한 가정에서의 협조 요청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여 학교폭력 발생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숙지하시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폭력 발생 후, 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한 관계회복**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면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관계가 편안해지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교에서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외부 전문가(교육지원청 관계개선 지원단)에 의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계회복은 무엇인가요?**

관계회복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한 학교폭력 상황에 대하여 상호 동의 하에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꼭 해야 하나요?**

교육 현장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관계회복을 조력할 때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계회복을 위해 용기 내어 어떤 말과 행동을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힘든 학생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한 관계회복과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관계회복은 무엇보다 당사자인 학생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 가해측을 만나 소통하는데 불안, 우울, 공포 등 심리적 어려움은 없는지 탐색해주세요.
- 가해측과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지 충분히 탐색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학생의 경우,

-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측에게 사과를 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주세요.
-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회복을 시도할 경우 서로 간 오해 및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 관계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자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던 학생들의 용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소통을 시도한 피해학생과 자신의 잘못을 용기 내어 피해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마음먹은 가해학생의 태도에 진심어린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서는 위 안내해 드린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O. O.

○○ 학교장

2. 분쟁조정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분쟁조정 개시)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분쟁조정의 개념

-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한다.

☑ 분쟁조정의 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피해, 금전적 손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학생 측 책임의 이행을 돕고 추가적인 피·가해를 방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민·형사소송 등 사법 단계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양측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 학교폭력 발생 후 교육 3주체 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피하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신뢰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1항, 제6항, 제7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7조제4항)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의 동기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음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02-598-1640, www.schooljikim.net.)
- • 분쟁조정을 위한 심의(소)위원회 구성(예시)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시 분쟁조정을 담당할 특별소위원회를 1개 이상 둘 수 있다.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범위(예시)	학부모위원	비고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교육장	임명 또는 위촉	3~7명 (소위원장 1인 포함)	1~3인	학부모 위원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

☑ 분쟁조정대상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분쟁조정신청

- 분쟁당사자(피해 및 가해 측)가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양식 5-1>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 분쟁조정기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률 제18조제2항).

☑ 분쟁조정관할권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동일한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일 경우 :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 분쟁조정거부·중지 및 통보

- 분쟁조정거부·중지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거부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 기거·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합의서 작성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 분쟁조정 종료 및 결과 보고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2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참고 **분쟁조정 진행 시나리오 (예시)**

- 분쟁조정은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회복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단계	주요내용
▶ 사전 준비	
담당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은 심의(소)위원회 구성시 분쟁조정을 담당할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쟁조정특별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함(예시)
동의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분쟁조정 동의 여부 확인 ■ 대상자별 기본정보, 사건내용, 분쟁조정 신청사유 확인
사실확인 및 쟁점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확인 (관련학생의 현재상태, 치료내역 등) ■ 분쟁의 경위와 대상자별 쟁점파악 ■ 피해·가해학생의 현재 상태와 손해 및 치료내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상태 : 관련학생 현재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상태, 학교 적응 여부 등 -치료내역 :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의료기관 영수증 등

2 예비조정

- * 예비조정*은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인 이상이 진행하며, 피해·가해학생 측 개별로 진행됨. 예비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본 조정이 진행됨
- * 예비조정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2회 이상 진행될 수 있음
- * 예비조정은 사실확인 및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피해정도 확인을 위해 피해학생 측을 우선 진행하며, 학생과 보호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욕구를 탐색할 수 있음
- * 손해배상과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 사안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자의 욕구를 탐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음

피해측 예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확인 ■ 분쟁조정 목적 및 기피신청 안내 ■ 분쟁조정 신청서에 근거한 사건내용 및 신청사유 확인 ■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상태 확인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및 분쟁조정(손해배상 및 그 외 욕구) 요청사항 탐색 ■ 분쟁조정 요청사항의 현실성 검토 및 조정안 검토
가해측 예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확인 ■ 분쟁조정 목적 및 기피신청 안내 ■ 분쟁조정 신청서에 근거한 사건내용 및 신청사유 확인 ■ 가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상태 확인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및 분쟁조정(손해배상 및 그 외 욕구) 요청사항 탐색 ■ 분쟁조정 요청사항의 현실성 검토 및 조정안 검토

3 분쟁조정(본조정)

개회 및 사안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개회 알림 ■ 분쟁조정 진행절차 안내 ■ 안전 상징 및 제척·회피 안내 ■ 주의사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은 상호 양보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자리임을 안내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관련 사항 안내 - 분쟁조정 참석자 전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사안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확인한 사안 안내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본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해 측 입장 및 참석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목적 및 기피신청 안내 - 주의사항 및 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안내 ■ 양측에서 제시한 조정(안) 안내 및 조정안 논의 ■ 위 조정(안)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조정안이나 그 밖에 관계회복 등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조정안 구성

<p>조정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안 성립 확인 및 합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결과 - 위 합의서에 분쟁당사자 및 심의위원 서명 날인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회복방안 논의 ■ 필요시 관련 지원기관 안내
<p>조정 불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립 확인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회복방안 논의 ■ 필요시 관련 지원기관 안내
<p>조치결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공문을 통해 합의서를 첨부한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행 협조를 요청함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고려될 수 있음.

IV. 조치결정 및 이행

-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1.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㉞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심의위원회의 지위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을 제12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② 피해학생의 보호
- ③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 심의위원회의 권한

- 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②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 소위원회 역시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되, 심의(소)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위원을 35% 이내로 제한함. 다만, 심의(소)위원회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5% 이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반드시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②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 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회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 ②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③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④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제5항).
-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5항).

☑ 심의방식

- 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②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 ③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5항).

☑ 심의기간

-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 ①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 표명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양식3-5)'를 첨부하여 보고 → 교육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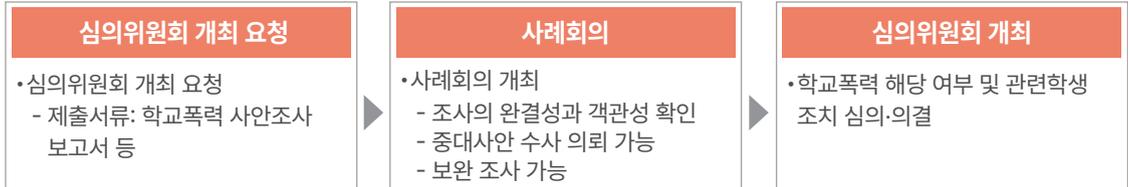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 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



* 공문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첨부서류

-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양식3-1>
-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2-4>
- ▶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양식2-1>
- ▶ 보호자 확인서 <양식2-2>
- ▶ (피해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양식2-3>
- ▶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양식2-5>
- ▶ 학생선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학교장 확인서, 선수등록증명서, 학생선수 확인서 중 1가지 이상)
 -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3830(2022.8.3.) 참조, 가해학생이 학생선수가 아닐 경우 필요하지 않음
- ▶ 기타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 사례회의에 따른 보완 조사 협조

- 학교는 사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의회하거나 보완조사하기로 결정시 제로센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한 협조하여야 한다.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피해 및 가해측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조치권자)은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 관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
 -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 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 등을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 조치이행 결과 보고
 -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법률 제19조제3항).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에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1조를 준용한다.
-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참고 피해학생 조치 시 안내할 사항

- ▶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시·도교육청 별도 안내)

☑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제3항).

-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 :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할 수 있다.

☞ 참고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구분		내용	인정가능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집행 기준 등)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5호 : 삭제

참고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에 따른 전학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시행령 제73조제6항, 시행령 제89조제5항), 해당 사·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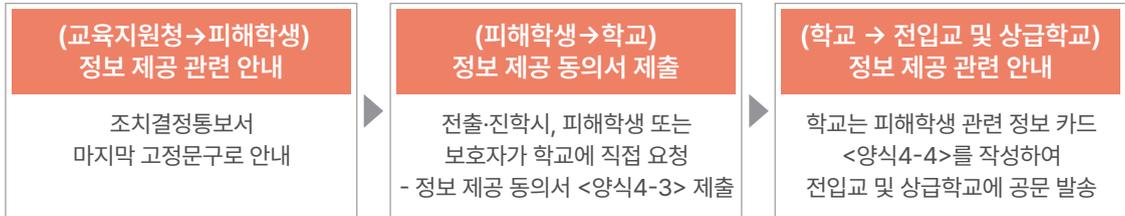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 출석일수 산입 :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4항).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한다.



☑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제1항). 따라서 장애인권 침해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위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다만,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범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③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있다.
-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⑪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의위원회가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조치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조치이행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병원 입원, 소년원 입소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조치 및 제17조제3항의 부가조치는 시간 단위로 결정한다
-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2항).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교원의 지위 상실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침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가능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 접촉 등 금지의 범위

- ▶ 시간적 범위: 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하다.
- ▶ '접촉'의 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리 조치와는 달리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5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 학교에서의 봉사

- ▶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지정하거나 배정할 수 있다.
- ▶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 사회봉사

- ▶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참고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 제6호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함.
- ※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 제8호 :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학 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조치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4항).

● 제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학 처분 시 학교의 장의 조치사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

☑️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5항).

▶ 조치결정 통보 및 이행 안내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조치 미이행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 (제2호 조치 위반의 경우) 학교장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처리
- (제3호~제9호 조치 미이행의 경우) 교육장(심의위원회)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 참고 제6호(출석정지)이행이 당해학년도에 종결되지 않고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 ▶ 동일 학교급 내: 당해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조치 결정 통보 시 받은 출석정지 일수를 그대로 기재한다. 다음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 상급학교 진학 시(초→중→고):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출석정지 잔여 일수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상급학교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

- ▶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미이행한 가해학생이 전출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원적교에서는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 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참고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 (법률 제17조제10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퇴학처분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과태료)

-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 가해학생 특별교육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 법률 제1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제3항).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13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13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 조치결정 통보 및 이수 안내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 조치 미이수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서면으로 안내한다.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한다.
 -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6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참고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 **운영 원칙**

- 기관 특성, 학교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가해 유형별 사례 관리 및 추수 관리
 -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원적교와 협력하여 상담의 효과성 제고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 ※ 대면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범위(보호자 타 시·도 거주 등)에서 온라인 원격 연수 방식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능
- 자녀의 심리상태 이해 등을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의 개인상담시 학생과 함께 또는 별도 실시 가능
- 개인 상담 실시 : 특별교육에 일정 시간 부과 및 필요 시 추가 가능
 -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 **교육 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과 기준**

교육 대상 처분	이수시간	교육 운영	비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상담 이수	보호자·학생 공동교육 가능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 **특별교육 기관 선정 및 안내**

- 교육청은 전국 시·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위(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단체(푸른 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림
-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특별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1. 기재 및 기재유보

관련법률 및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3. 출결사항: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사항: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구체적인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도 변경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시 유의사항

- ①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②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한다.
- ③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동시에 부과한 경우 동시에 부과된 조치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한다.
-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추인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 제17조제4항의 긴급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심의위원회의 추인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을 입력하지 않음.
 -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긴급조치 범위 :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학내외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 ⑤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⑥ 조치결정 일자(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한다.
 -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함(유예, 자퇴 등 학업중단자 포함).
- ⑦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받은 학년도(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 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한다.
- ⑧ 학적이 정지된 자(유예생)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전학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할 당시 중 복기간 동안 해당 학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조치 사항이 입력된 내용은 유지한다.
 -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함.
- ⑨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한다.

* 일원화 적용 시기 및 적용 학년

1.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2.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3. 2027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4. 2028년 3월 1일: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5. 2029년 3월 1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⑩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해당 학생이 학적 변동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은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이에,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의 관리·보유도 동일하게 적용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①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된다.
-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를 보류한다.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2. 기재내용 삭제

관련법률 및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를 관리·보존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 제1호~제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 삭제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2023.3.1. 부터 2024. 2. 29.까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2024.3.1.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표와 같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초·중·고 1, 2학년>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1·2·3호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5호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2024.3.1.이후	2023.3.1.~2024.2.29.	2023.2.28.이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출결상황 특기사항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 결정 (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시 유의사항

● [제1호·제2호·제3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제2호·제3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함.

●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제5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호·제7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 심의요건

-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8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8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 행정심판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집행정지)

-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㉓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 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㉑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㉒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㉓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㉕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㉖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㉗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 ㉑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㉒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 ㉑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㉒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㉓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㉔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㉕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 행정심판의 대상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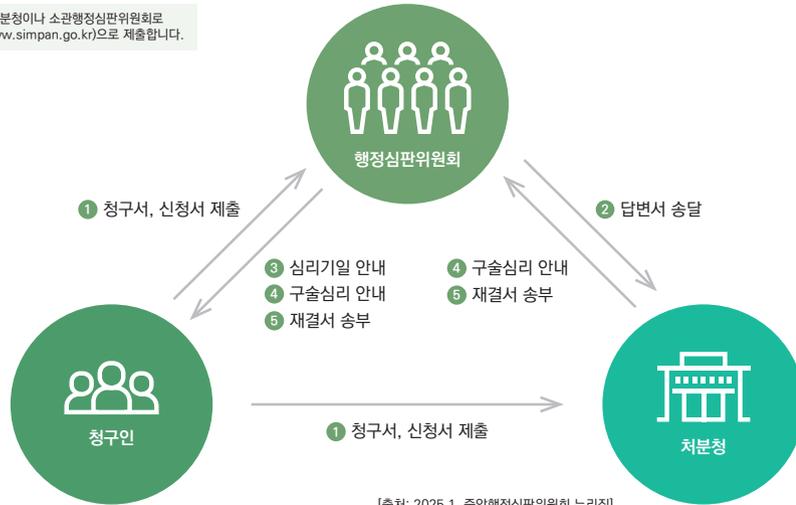
☑ 행정심판 청구기간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의 절차

청구서, 신청서 등을 처분청이나 소관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합니다.



-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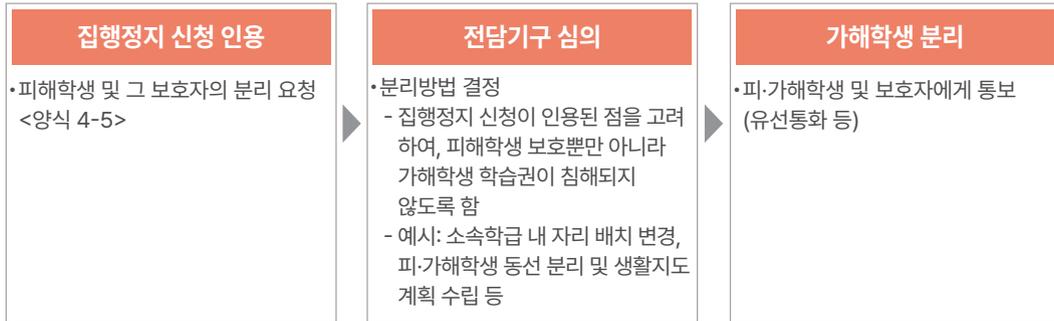
☑ 집행정지

-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시행령 제24조제2항)
-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측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7항 참고)
-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참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분리 절차]



2. 행정소송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행정소송)

-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집행정지)

-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

- ①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학생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와 피해학생등에게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⑦ 피해학생들이 제1항 단서의 의견서 또는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피해학생들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⑧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들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청취한 피해학생들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들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소송규칙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 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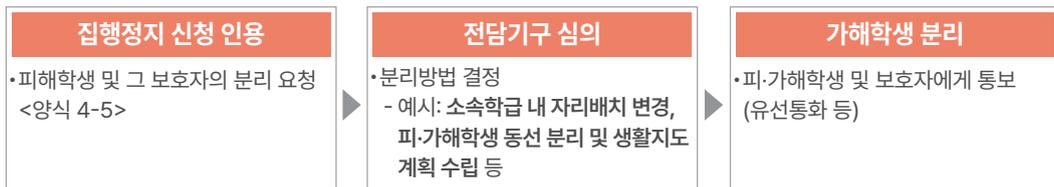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항)

-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6항)
- 피해학생등이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7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참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집행정지 기간 동안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분리 절차>



-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의 구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가해자를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참고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 여부 통보

- ▶ 피해학생이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피해학생 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 행정소송 규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 여부를 안내할 수 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민사 책임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책임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이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면책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 민사상, 형사상 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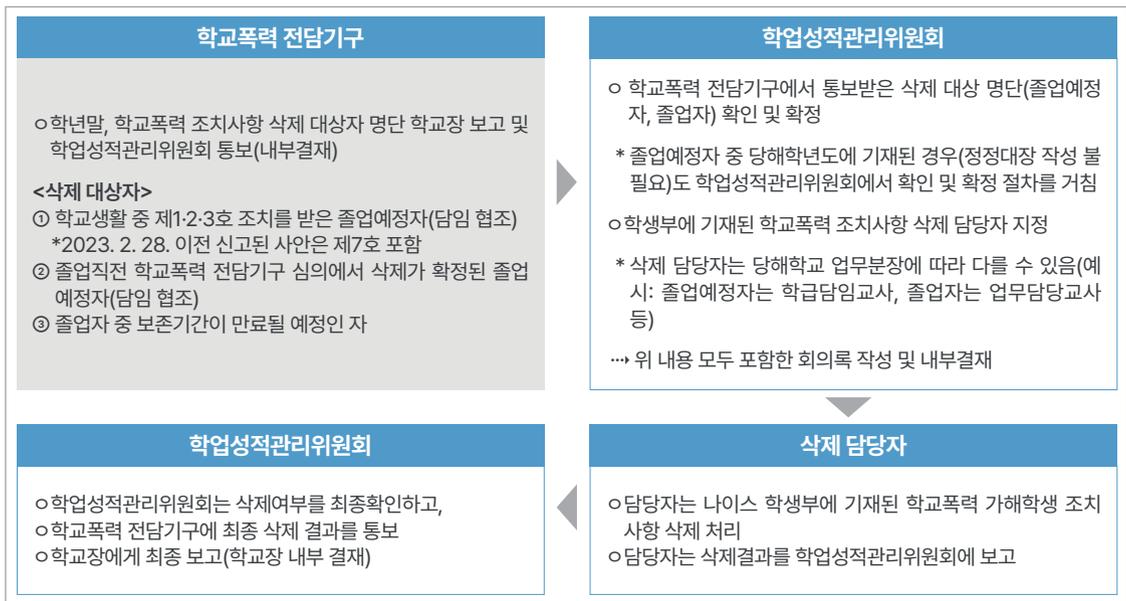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률 제11조의4제3항).

참고2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강화)

※ 본 절차는 2024. 3. 1. 이후 심의부터 적용 (2024. 2. 29. 이전 신고되어 받은 가해학생 조치사항도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절차 및 방법

-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년말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대상자 확인, 담당자 지정, 결과 확인 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

☑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방법

- ① 심의 원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학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4호.제5호.제6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제7호 내용 삭제 여부 심의
 - * 2023.2.28.이전 신고된 사안은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삭제 여부 심의
 - *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기존 졸업자는 제외)
 - 해당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확인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심의

· 확인자료

자료명	제출담당	제출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	학교폭력 전담기구	필수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 첨부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담당부장)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보호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심의 대상자(가해학생)	
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여부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고
⑦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삭제 동의 확인서	피해학생	

● 심의 요건

-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 받지 않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심의 절차

단계	처리내용	주관
심의대상 선정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졸업 직전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여부 심의를 위한 대상자 선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된 졸업 예정 학생 중 심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을 삭제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학교장에게 보고(내부결재)),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삭제 심의 관련 사항(삭제 심의 절차, 필수 확인자료 등)을 안내함 * 삭제 심의해야 할 가해학생 조치사항 2023.3.1. 이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조치 2023.2.28. 이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조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 협조)
심의자료 수집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삭제 심의를 위한 자료 취합 ■ 필수 확인자료: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③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확인서 ④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참고 확인자료: 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여부 ⑦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삭제 동의서 ※ ①은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작성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 협조)
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보고 및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해당 학부모에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 심의 방법

- (심의 시기) 매 학년말(1월~2월)
- (심의 자료) 확인자료 및 참고 확인자료를 토대로 심의
- * 입증을 위한 확인자료: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확인서 ③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④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 확인자료 ①~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삭제 불가
- * ①은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
- * 입증을 위한 참고자료(선택): 기타의견서(전 담임, 교과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등), 외부전문가(정신과 의사 등) 의견서 및 입증자료,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
- (심의의결 방법) 전담기구 구성원이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심의 기준(예시)

항목	구분	배점	관점 및 기준	점수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40점)		20점	■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가?	
		10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부가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포함)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10점	■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였는가(불복 진행 여부)?	
학교생활의 성실성(20점)		5점	■ 충실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점	■ 학교 또는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는가?	
		5점	■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가?	
		5점	■ 교우관계가 원만한가?	
피해학생과의 관계(30점)		15점	■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15점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회복 되어 피해학생으로부터 삭제 동의서를 제출받았는가?	
기타 고려사항(10점)		5점	■ 가해학생 조치 이후 특별한 선행이나 유공사례가 있는가?	
		5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합계				

- 심의 기준 및 배점 조정, 삭제 찬성 기준 점수 등은 심의 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 [예시] 점수 합계 60점 이상인 위원은 삭제 찬성에 해당됨 / 조치 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50점, 학교생활의 성실성 10점으로 조정 등
-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 확인 자료 ①~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삭제 불가

부록1

각종 양식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신고 및 접수

- 1-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 1-2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 1-3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2. 사실확인 및 사안조사

- 2-1 학생 확인서
- 2-2 보호자 확인서
- 2-3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 2-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2-5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 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 2-7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3. 학교장 자체해결제

- 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 3-2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3-3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 3-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 3-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 3-6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종결 보고서
- 3-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4-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 4-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 4-3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 4-4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 4-5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피해학생 분리 요청서

5. 분쟁조정

- 5-1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1-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 ()학교

사안 번호	신고 접수 일시	사고자 (연락처) 또는 신고기관	신고내용	접수 사실 통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작성자 (책임 교사)
				피해관련 학생/보호자	가해관련 학생/보호자		
2025-1				2025. 3. 8. 유선통보	2025. 3. 8. 유선통보	분리 시행	
2025-2						분리 미시행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참고] 사안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양식1-2]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 사안 번호: (학교에서 작성,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의 사안 번호)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희망합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합니다(법률 제16조 제1항).

※ 사안조사 전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의 의미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1일~7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되면 종료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기간에 포함(초일 포함)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025 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양식1-3]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 사안번호:()학교 2025-()호

학교명	교	성명	담당자 (책임교사)			성명
	감	휴대전화				휴대전화
접수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 처리			접수· 인지경로	* 피해자 직접신고 * 담임, 보호자 신고 * 주변 학생 신고	
조사관 배정 요청	조사관 배정 요청 <input type="checkbox"/> 학교 자체 조사 <input type="checkbox"/>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2025. 00. 00.)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의 분리학생분리 예외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시행 <input type="checkbox"/>			* 피해학생 반대 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사실확인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관련 학생	성명	학교명	성별	학번	보호자 통보여부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기타 사항	(경찰신고, 고소, 소송 여부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112 또는 117) 신고(신고 일시 기재)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여부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에 따른) 학생 조사 가능 시간	피해학생					
	가해학생	ex. 2025. 3. 9. ~ 3. 12. 위(Wee)클래스 분리 중이므로 해당 기간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48시간 이내 보고)

[양식2-1]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작성 확인서

(학교) 최초 학생 작성 (전담조사관) 추가 학생 작성

* 사안번호:()학교 2025-()호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관련학생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필요한 도움					
작성일	2025년 ____월 ____일	작성 학생	(서명)		

[양식2-2] 보호자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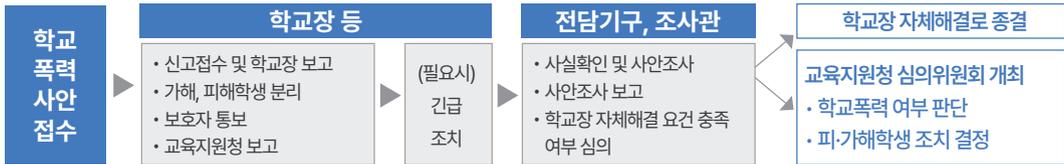
보호자 확인서

* 사안번호:()학교 2025-()호

1.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 인지 경위					
현재 자녀의 상태		신체적- 정신적-			
자녀 관련 정보	교우 관계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녀 확인 내용	(사안에 대해 자녀가 보호자에게 말한 것)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특이점, 성격 등)			
현재 보호자의 심정		(어려운 점 등)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		(보호자가 파악한 자녀의 요구사항 등)			
작성일	2025년 ____월 ____일		작성자	(서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1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 후, 가해학생을 최대 7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분리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제2호(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합니다.
- 필요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까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 (추정)학생 및 가해관련(추정) 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2 사실확인 및 사안 조사

- 관련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최초 학생확인서를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추가 학생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호자 면담, 목격학생 면담 등을 실시합니다.

관련학생이 다른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학교별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안내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사안조사를 마치면,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4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양측의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교육장은 조치를 최종 결정하여 피·가해학생과 학교에 통보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능성, 피해학생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5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 피·가해학생은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이행기간 내 이행을 한 경우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학교는 피해학생의 적응,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 주변학생 교육에 노력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성일 2025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양식2-3]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 사안번호:()학교 2025-()호

대상학생	학년 / 반		성명	
사안 개요 (조치원인)	※ 접수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조치 내용	피해학생	조치 사항		
		법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가해학생	조치 사항	조치의 종류	조치의 기간
		법적 근거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조치일자	년 월 일			
긴급 조치의 필요성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여부	① 의견청취 완료 (일시: _____, 방법: _____) ②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지	통지일자			
	통지방법			
			작성자 :	
			확인자 :	학교장

[참고]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법률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함

[양식2-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1차 조사□ / 보완조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학교 2025-()호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표시, 가해(관련)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 관련 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 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이사 표명()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 조사관의 의견						자체해결 등의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의견(충족 여부)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기재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자료, 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학생의 진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쟁점 2.	※ 위와 동일	근거자료 ※ 위와 동일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 • 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횡수 기재	
	학년	시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참고]

1.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확인 시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판단사항	작성 시 참고 사항
1. 심각성 판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여부 및 피해의 정도 • 폭력 유형의 복합성 여부 및 정도 • 집단폭행 여부 및 집단폭행의 주도 여부 • 폭력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특성 •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시간의 특성 • 언어폭력 또는 사이버폭력 행위의 위험 정도 •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2. 지속성 판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행위 자체의 지속 여부 • 폭력행위 자체의 반복 여부 • 사이버폭력 행위의 지속 여부
3. 고의성 판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행위 전 피·가해학생 간 관계와 마찰 여부 • 폭력행위의 사전계획 여부 •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있게 된 이유 •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폭력행위를 했는지 여부 •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 여부
4. 반성 정도 판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신고 이전에 가해학생의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 성실히 참석했는지 여부 •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 가해학생의 사과 및 관계회복, 분쟁조정 참여 의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정도 •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 피해학생과의 추가적인 갈등 또는 보복행위 발생 여부 • 맞신고 제기 여부 (보복 등 악용 여부 등)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판단사항	작성 시 참고 사항
5. 화해 정도 판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피해학생과 보호자 대상 사과 또는 관계회복(화해) 여부 • 상호 간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이 되었는지 여부 (고소·고발 취하 여부 포함)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의사 정도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사과를 받거나 화해할 의지 정도 등 • 관계회복 또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판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가 있는지 여부(해당 학교급)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여부(해당 학교급) • 사안발생(접수) 전 평소 생활태도와 사안접수 이후의 생활태도 변화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충분한 교육적 조치인지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조치인지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확인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당시) 피해학생의 장애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폭력행위가 피해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양식2-7]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 사안번호:()학교 2025-()호

책임교사: 김○○ (서명) 담당 조사관: 박○○ (서명)

연 번	자료명	구분	자료 형식	자료 분량	제공일	제공방법	제공자	자료 폐기	
								폐기일	폐기자
1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사본	피해 (이○○)	인쇄물	2쪽	2025. 3.15.	직접	책임교사 김○○	2025. 12.20.	책임교사 김○○ 조사관 박○○
2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사본	가해 (정○○)	인쇄물	1쪽	2025. 3.13.	직접	책임교사 김○○	2025. 12.20.	책임교사 김○○ 조사관 박○○
3	보호자 확인서	가해 학부모	PDF	2쪽	2025. 3.13.	이메일	책임교사 김○○	2025. 12.20.	책임교사 김○○ 조사관 박○○
5									
6									
7									
8									

[참고]

- 관련 학생이 많은 경우, 확인서 등을 묶어서 기재 가능
- 책임교사는 위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함
- 사안 종료 후 조사관은 모든 자료를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폐기하고 서명함

[양식3-3]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학교 2025-()호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기록 (예 : 객관적 요건(4가지) 충족 여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여부, 양자 간에 화해,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학생의 용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등의 내용)			
<p>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보고합니다.</p> <p>2025.00.00</p> <p>○○학교장</p>				

[양식3-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 사안번호:()학교 2025-()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p>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취소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 00.00.</p> <p style="text-align: right;">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p>				

[참고]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개최 요구 취소 요청 공문에 첨부함

[양식3-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사안번호:()학교 2025-()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신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가해자 학생이 아니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 00.00.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장 귀중</p>				

[참고]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서(본 양식)을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양식4-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2000학년도 입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2000학년도 입학생)

인적사항				조치 일자	졸업 예정일 (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유보 조치 포함)	졸업 2년 또는 4년 후 삭제 사항	
학년	반	번호	성명				전담기구 심의 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삭제 시기(월)
6	1		A	2025. 3.12.	2026. 2.	제3호		
6	1		A	2025. 6.23.	2026. 2.	제1호 · 제2호 · 제3호		
6	1		A	2025. 8. 4.	2026. 2.	제2호 · 제5호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5호는 심의 대상 아님)	2028. 2.
6	4		B	2025. 12.12.	2026. 2.	제1호 · 제7호 (제1호 기재유보)	(졸업학년도 2월말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제7호는 심의대상 아님)	2030. 2.

- * 보존기간: 졸업 후 4년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대장에 기재
- *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송부

[양식4-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2000학년도 입학생)**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2000학년도 입학생)**

학년	인적사항			조치일자 (이행기간)	조치사항	이행 완료일	비고
	반	번호	성명				
3	1	25	김삿갓	2025.4.5. (2025.00.00.)	제1호	2025.00.00.	
3	2		홍길동	2025.5.12. (2025.00.00.)	제3호	2025.00.00.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음

※ 조치일자는 교육장 내부결재일(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통보함)

※ 조치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란에 취소선을 그음

※ 보존기간: 졸업학년도 2월말에 폐기

※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송부

[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기재하지 않음.

•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

[양식4-4]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학교명		□□중학교					
학년	2	반	2	번호	2	성명	김□□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 결정		○○교육지원청 교육장 (2000.00.00.)					
<p>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p> <p>○○○○학교장</p>							

부록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교 기숙사는 정규 교육과정 종료 이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기주도적 생활능력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 환경이 가능하도록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사감, 기숙사 관리 담당교원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 학교 기숙사(생활관, 학사 등) 내 학교폭력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 학교의 장은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지체없이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생활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공간 분리를 위한 노력
 - ※ 피·가해학생이 같은 침실 공간을 이용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가해자의 침실 공간을 분리 배치함.
 - ※ 분리 배치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기숙사 내에서의 동선 분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함.
 - ※ 그 밖에 침실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학생을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기숙사 내 여가시간 등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분리 노력 필요).
 - 가해행위가 명확하고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시·공간 분리가 어렵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선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학생과의 분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조치번호	조치내용	조치목적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기숙사 침실공간 분리 배치, 피·가해학생 기숙사 내 동선 분리, 피해학생 도래 지킴이 지정 등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 긴급조치 사유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사례회의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사례회의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의 범위

근거	사유	절차	범위	사후 절차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 결정	제2호	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학교장 결정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가해학생 교육·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5호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 학교의 기숙사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관리)사감의 근무수칙(순회지도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시설)남녀 학생이 구분 배치(건물, 층)되어 있으며,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외박 관리, 외부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 운영계획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안)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2회 이상)을 실시하였는가?

부록3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시행일: 2025. 8. 1.] 제2조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5. 1. 21.>
 -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2025. 1. 21.>
 -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23. 10. 24., 2025. 1. 21.>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 [시행일: 2025. 5. 22.] 제6조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 ① 국가는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10. 24.]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전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5. 1. 21.>
-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25. 1. 21.>
[제목개정 2012. 1. 26.]
[시행일: 2025. 5. 22.] 제10조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반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23. 10. 24.>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 ㉑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㉒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㉓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㉔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 ㉕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 ㉖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5.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㉗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1.>
 - ㉘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 ㉙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 21.>
 - ㉚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 ㉛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 1. 21.>
-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 ㉑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 ㉒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 ㉓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고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 ㉔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 ㉕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3. 10. 24.>
 -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23. 10. 24.>
- [제목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 1. 삭제 <2012. 3. 21.>
 - 2. 삭제 <2012. 3. 21.>
-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을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에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에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5. 8. 1.] 제16조의4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의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㉞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 ㉟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제17조의2(행정심판)

-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 ⑤ 삭제 <2019. 8. 20.>
 - ⑥ 삭제 <2019. 8. 20.>
-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7조의3(행정소송)

-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3. 10. 24.]

제17조의4(집행정지)

-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10. 24.]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8조(분쟁조정)

-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전문개정 2019. 8. 20.]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 삭제 <2023. 10. 24.>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중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20670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폭력 조사·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233호, 2024. 2. 27.,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 학생의 치유·회복 관련 조사·분석 등 연구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의 치유·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31.>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 2. 27.>

제9조(실태조사)

-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24. 2. 27.>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3. 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업무
4.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2024. 2. 27.>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5.>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2024. 2. 27.>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의2(소위원회)

-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조(상담실 설치)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2. 27.>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 ·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 · 필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 운영)

-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라.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②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7.>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7.>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7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25조(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조(분쟁조정 개시)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의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 관제)

-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제목개정 2023. 9. 12.]

제33조(비밀의 범위)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0.]

제34조 삭제 <2021. 3. 2.>**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 칙 <제34233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27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할 때 해당 학교 급(초,중,고)내에서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연구진

-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현정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송은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정연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김경신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박대광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기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부대표)
변국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검토진

- 박혜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
길경섭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연구사)
고재범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주무관)
김민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이지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사공현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파견교사)
이구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구희남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정익수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일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전우석 (충북청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우인식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정재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
신창훈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박민규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